

대학원 산업공학과 운영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산업공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**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**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 산업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산업공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제4조 (교육과정)

제5조 (과목개설)

제6조 (교·강사 배정)

제4장 논문지도

제7조 (지도교수의 선정)

제5장 자격시험

제8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- ① 석사학위과정은 국내 KCI급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.
- ② 박사학위과정은 SCI(E)급 국제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.
- ③ 게재 증빙은 게재(예정)증명서, 논문 원본 등 게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.

제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의 종합학력시험이 필기시험 또는 구두시험 형태로 시행된다.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으며,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하여야 한다.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제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(연수)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.

제6장 학위과정

제11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다만 대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가능하다. 단, 연계과정생은 2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가능하다.

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13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

제14조 (예비발표)

제15조 (논문심사위원)

제16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 석사학위 연구논문(학위논문대체)의 심사절차는 학위논문절차에 준한다.

제17조 (논문대체 제출) 석사학위 연구논문(학위논문대체)의 연구보고서는 학위논문 형식을 따르며,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. 단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지 않고, 학위 논문 온라인 등재는 없다.

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8조 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0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